

대구지방법원 2022. 5. 25 선고 2021나31794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5. 25 선고 2021나317940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1. 7. 14 선고 2020가단13196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남

담당변호사 이현정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B

변론종결 2022. 3. 30.

판결선고 2022. 5. 25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가단13196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1.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

2018. 8. 2.자, 별지 목록 제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. 8. 9.자 각 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
2.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,

가. 별지 목록 제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8. 8. 14. 접수 D로 마친,

나. 별지 목록 제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E로 마친,

다. 별지 목록 제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F로 마친,

라. 별지 목록 제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날 접수 G로 마친

각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4행의 “대표이사”를 “전 대표이사”로, 같은 면 16행의 “7호증의”를 “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”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래아, 판사 김지영, 판사 윤남현

별지